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방	송	통	신
발	전	기	금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건 오

【 목 차 】

I.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1. 총 괄	1
2. 세입세출예산안	3
1) 총 괄	5
2) 인건비	5
3) 기본경비	6
4) 주요사업비	8
3. 기금운용계획안	10
1) 총 괄	13
2) 사업비	14
II. 검토의견	17
1. 총괄	17
1)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3132-302)·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3134-317)·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3135-302)·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 (3251-308):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부적절 · 17	
2. 일반회계	24
1) 과태료(56-563): 불법스팸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 노력 필요	24
2) 기획조정관(7111-212): 소송비용 증가 등을 고려한 소송비용 관련 예산안 검토 필요	28
3) 법정위원회 운영(7131-30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에 맞는 통신분	

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 보수 예산 반영 필요	34
4)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2141-309): 불법스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ISP 예산 반영 필요	40
5) EBS 방송인프라 개선(2171-303): UHD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동 사업 예산과 연계할 필요	45

3. 방송통신발전기금 49

1)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3135-301): 연례적인 정책연구비 수의계약 과다 개선 필요 ...	49
2)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3132-317): 신규 반영된 국제컨퍼런스 계획 구체화 필요	53
3)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3251-318): 법령 정비 미비에 따른 실태점검 예산 조정 필요	58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3132-310): 대국민 홍보 예산 편성의 적절성 재검토 필요	66
5)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3132-311): 성과지표 ‘방송광고 법 규준수율’의 개선 필요	71
6)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3134-301): 방송대상 시상금에 대한 법령상 근거 미비	75
7)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3134-303): 내역사업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예산 조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	80
8) 안전한 AI 활용 기반조성(3251-321): 보조사업자 지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85

I.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총 관

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지출 규모는 2,485억 400만원으로, 2024년도 2,502억 6,000만원 대비 17억 5,600만원($\Delta 0.7\%$) 감소하였음.

- 2025년도 예산안(일반회계)의 총지출 규모는 504억 8,500만원으로, 2024년도 491억 1,800만원 대비 13억 6,700만원(2.8%)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980억 1,900만원으로, 2024년도 2,011억 4,200만원 대비 31억 2,300만원($\Delta 1.6\%$) 감액 편성되었음.

<202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지출 계(A+B)	250,260	248,504	$\Delta 1,756$	$\Delta 0.7$
예산(일반회계)(A)	49,118	50,485	1,367	2.8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B)	201,142	198,019	$\Delta 3,123$	$\Delta 1.6$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2025년도 재원배분 방향

○ 2025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 조성, ② 국민이 행복한 이용자 정책 조성을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 조성을 위해서 안전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위치정보 사업 모델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화를 지원하며, 안전한 AI 활용기반 조성 및 불법스팸·불법유해정보 차단 등을 통해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재원을 배분하였음.
- ② 국민이 행복한 이용자 정책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맞춤형 TV 보급 확대를 통해 소외계층의 시청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하며,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및 방송정보 가치정보 분석 등을 실시하여 미디어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재원을 배분하였음.

<2025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비중
• 전략목표 1 :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을 조성한다.	1,217	57.1
• 전략목표 2 : 국민이 행복한 이용자 정책을 조성한다	916	42.9
계	2,134	100.0

자료: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계획서

2.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구성되는데, 2024년도 예산 308억 4,400만원에 비하여 1억 700만원(0.3%) 증액된 309억 5,1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증감액(B-A)	증감률(%)
벌금 및 과료	6	6	0	0.0
과태료	4,022	4,077	55	1.4
과징금	25,585	25,585	0	0.0
가산금	141	180	39	27.7
기타경상이전수입	979	979	0	0.0
면허료 및 수수료	71	74	3	4.2
기타 잡수입	1	1	0	0.0
기타재산이자수입	39	49	10	25.6
계	30,844	30,951	107	0.3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벌금 및 과료¹⁾는 2010년 이전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예산액 수준인 600만원이 편성됨.

1) 2010년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벌금 및 과료’로, 이후 부과된 과태료는 2010년 신설된 ‘과태료’ 항목으로 계상됨.

- 과태료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데,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5,500만원(1.4%) 증액된 40억 7,700만원이 편성됨.
- 과징금 역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데,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수준인 255억 8,500만원이 편성됨.
- 가산금은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 시 부과되는데,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3,900만원(27.7%) 증액된 1억 8,000만원이 편성됨.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및 소송비용 보전금 등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수준인 9억 7,900만원이 편성됨.
- 면허료 및 수수료는 방송국 및 방송보조국 허가 신청 수수료로 2024년도 대비 300만원(4.2%) 증액된 7,400만원으로 편성됨.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출연 및 보조사업비 예치 이자수입으로, 2024년도 대비 1,000만원(25.6%) 증액된 4,900만원로 편성됨.

나. 세출예산안

1) 총 괄

-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4억 8,500만원으로, 2024년도 491억 1,800만원 대비 13억 6,700만원(2.8%) 증액 편성됨.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인건비	22,938	24,416	25,655	1,239	5.1
기본경비	3,806	4,660	4,852	192	4.1
주요사업비	20,442	20,042	19,978	△64	△0.3
계	47,187	49,118	50,485	1,367	2.8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 인건비

-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256억 5,5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244억 1,600만원 대비 12억 3,900만원(5.1%)이 증액됨.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인건비 합계	22,938	24,416	25,655	1,239	5.1
□ 세 목 별					
○ 보 수(110-01)	22,496	23,700	24,298	598	2.5
○ 기타직보수(110-02)	326	532	1,171	639	120.1
○ 연가보상비(110-05)	116	184	186	2	1.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인건비 처우개선 및 전문임기제 채용 등으로 전체 인건비는 12억 3,900백만원 증액됨.

3) 기본경비

-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48억 5,2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46억 6,000만원 대비 1억 9,200만원(4.1%)이 증액됨.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 액 인 건 비 대 상	운영지원과	1,149	1,294	1,340	46	3.6
	기획조정관	166	176	178	2	1.1
	대변인	55	78	78	0	0.0
	방송정책국	17	24	24	0	0.0
	이용자정책국	27	33	34	1	3.0
	방송기반국	9	17	17	0	0.0
	방송통신사무소	89	106	106	0	0.0
	소 계(A)	1,512	1,728	1,777	49	2.8
총 액 인 건 비 대 상	운영지원과	673	896	903	7	0.8
	기획조정관	1,024	1,270	1,396	126	9.9
	대변인	35	45	47	2	4.4
	방송정책국	106	131	131	0	0.0
	이용자정책국	122	145	153	8	5.5
	방송기반국	93	125	125	0	0.0
	방송통신사무소	241	320	320	0	0.0
	소 계(B)	2,294	2,932	3,075	143	4.9
합 계(A+B)		3,806	4,660	4,852	192	4.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2025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17억 7,7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4,900만원(2.8%)이 증액되었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30억 7,5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4,300만원(4.9%)이 증액됨.

4) 주요사업비

-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199억 7,8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200억 4,200만원 대비 6,400만원 (△0.3%)이 감액됨.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 계	20,442	20,042	19,978	△64	△0.3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758	2,499	1,940	△559	△22.4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2,344	2,098	2,705	607	28.9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229	215	215	0	0.0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3,291	3,221	3,201	△20	△0.6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6,089	5,766	6,089	323	5.6
EBS 방송인프라개선	1,603	1,322	1,210	△112	△8.5
국내외협력 업무수행	518	635	632	△3	△0.5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89	306	361	55	18.0
공약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229	234	237	3	1.3
법정위원회운영	135	144	202	58	40.3
방송통신위원회시설운영	908	973	969	△4	△0.4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189	256	205	△51	△19.9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853	1,256	841	△415	△33.0
행정사무정보화	1,207	1,117	1,171	54	4.8

주 1. 음영: 증액사업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은 방송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의 운영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3억 2,300만원(5.6%) 증가한 60억 8,900만원이 편성됨.
- ‘법정위원회운영’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책수립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5,800만원(40.3%) 증가한 2억 200만원이 편성됨.
- ‘행정사무정보화’ 사업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5,400만원(4.8%) 증가한 11억 7,1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용계획안

가. 수입계획안

-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 규모는 8,752억원 6,100만원으로, 2024년도 수정대비 3,774억 1,300만원 (△30.1%)이 감소하였음.

<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계획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당초	2024 수정(A)	2025 계획안(B)	증 감	
				(B-A)	(B-A)/A
수입 합계	1,252,674	1,252,674	875,261	△377,413	△30.1%
□ 자체수입	664,323	664,323	638,778	△25,545	△3.8%
○ 법정부담금	609,171	609,171	563,333	△45,838	△7.5%
○ 재산수입	5,294	5,294	5,320	26	0.5%
○ 기타수입	49,858	49,858	70,125	20,267	40.6%
□ 정부내부수입	263,309	263,309	177,258	△86,051	△32.7%
○ 공자기금 예탁원금회수	-	-	-	0	0.0
○ 공자기금 예탁이자수입	-	-	-	0	0.0
○ 공자기금 예수금	263,309	263,309	177,258	△86,051	△32.7%
□ 여유자금회수	325,042	325,042	59,225	△265,817	△81.8%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통위·과기정통부 공동관리기금으로 수입은 통합하여 작성

○ 첫째, 자체수입 중 법정부담금은 방송사 부담금 및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으로, 법정부담금 5,633억 3,300만원 중 주파수할당대가는 4,061억 1,000만원이고 방송사분담금은 1,572억원 2,300만원임.

- 주파수할당대가는 주파수 재할당 등에 따라 2024년도 대비 57억 1,100만원 감소된 4,06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방송사분담금은 IPTV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4년도 대비 401억 2,700만원 감소된 1,572억 2,300만원이 편성됨.

<방송사 부담금 수입 예산>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자	2025년 전망액
과기정통부	종합유선(SO)	24,723
	위성방송	7,196
	IPTV	76,460
	홈쇼핑	17,532
과기정통부 소계		125,911
소관	사업자	2025년 전망액
방통위	지상파	23,306
	종편·보도 PP	8,006
방통위 소계		31,312
합 계		157,223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24년도 대비 2,600만원 증가한 5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경상이전수입은 2024년도 대비 202억 6,700만원 증가한 701억 2,500만원이 편성됨.
- 둘째, 정부내부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2024년 대비 860억 5,100만원 감소한 1,772억 5,800만원이 편성됨.
- 셋째, 여유자금회수는 통화 및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 기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2024년도 대비 2,658억 1,700만원 감소된 592억 2,5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 개요>

(단위: 백만원)

부처	소관	수입 (875,261)	지출 (875,261)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종편, 보도	자체수입 (638,778)	사업비 (198,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O(종합유선), 홈쇼핑, 위성, IPTV 등	정부내부수입 (177,258)	여유자금 등 (142,584)
		여유자금회수 (59,225)	사업비 (534,658)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지출계획안

1) 총 괄

-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 계획안은 8,752억 6,100만원으로 2024년도 대비 3,774억 1,300만원(△30.1%)이 감액 편성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지출계획안은 1,980억 1,900만원으로, 2024년도 대비 31억 2,300만원(△1.6%)이 감액되었음.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A)	2025 계 획(B)	증 감 (B-A)	(B-A)/A
지출 합계	1,252,674	875,261	△377,413	△30.1%
○ 사업비	901,203	732,677	△168,526	△18.7%
- 방송통신위원회	201,142	198,019	△3,123	△1.6%
▪ [3131]방송인프라지원	61,710	58,308	△3,402	△5.5%
▪ [3132]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78,025	80,026	2,001	2.6%
▪ [3133]시청자권익보호 및 참여활성화	23,133	23,709	576	2.5%
▪ [3134]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9,656	8,285	△1,371	△14.2%
▪ [3135]방송통신운영지원	7,286	7,229	△57	△0.8%
▪ [3251]안전한인터넷정보활용기반구축	21,332	20,462	△870	△4.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0,061	534,658	△165,403	△23.6%
○ 기금운영비	4,219	4,073	△146	△3.5%
○ 정부내부지출	38,154	46,098	7,944	20.8%
- 기금예탁이자상환	38,154	46,098	7,944	20.8%
○ 여유자금운용	309,098	92,413	△216,685	△70.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소관 지출계획안 중 기금운영비는 40억 7,300만원으로 1억 4,600만원($\Delta 3.5\%$) 감액되었고, 기금예탁이자상환은 460억 9,8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79억 4,400만원 (20.8%) 증액 편성 되었으며, 여유자금운용은 924억 1,3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2,166억 8,500만원($\Delta 70.1\%$)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사업비

-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1,980억 1,900만원으로, 2024년도 계획 대비 31억 2,300만원($\Delta 1.6\%$) 감액 편성됨.
- 2025년도 사업비 계획안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20억 100만원(2.6%),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5억 7,600만원(2.5%)이 증액 편성된 반면, 방송인프라 지원 34억 200만원($\Delta 5.5\%$),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13억 7,100만원($\Delta 14.2\%$), 방송통신 운영지원 5,700만원($\Delta 0.8\%$),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8억 7,000만원(4.1%)이 2024년도 계획 대비 감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계획(B)	증 감 (B-A)	(B-A)/A
□ 사업비	207,481	201,142	198,019	△3,123	△1.6
○ 방송인프라지원	72,925	61,710	58,308	△3,402	△5.5
-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32,164	32,774	30,064	△2,710	△8.3
-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23,423	13,430	12,070	△1,360	△10.1
- 국악방송 지원	6,456	5,842	5,258	△584	△10.0
-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6,352	5,034	6,352	1,318	26.2
- 지역·중소방송콘텐츠 경쟁력강화	4,530	4,530	4,464	△66	△1.5
- AM라디오송출지원	-	100	100	0	0.0
○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72,834	78,025	80,026	2,001	2.6
- 미디어다양성증진	3,990	3,290	3,290	0	0.0
-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379	468	457	△11	△2.4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15,718	20,176	21,870	1,694	8.4
-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13,186	13,802	14,545	743	5.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36,593	36,560	36,736	176	0.5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 구축	1,743	1,770	1,640	△130	△7.3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	612	632	565	△67	△10.6
-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300	300	270	△30	△10.0
- 인터넷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313	1,027	653	△374	△36.4
○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26,852	23,133	23,709	576	2.5
-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1,368	1,468	1,276	△192	△13.1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25,284	21,665	22,433	768	3.5
-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200	-	-	0	0.0
○ 방송콘텐츠 경쟁력강화	8,351	9,656	8,285	△1,371	△14.2
- 방송콘텐츠 기반강화	296	310	290	△20	△6.5
- 방송평가 기반조성	829	871	850	△21	△2.4
- 방송광고 공공인프라구축지원	2,449	2,449	1,932	△517	△21.1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1,591	2,356	1,883	△473	△20.1
- 방송정보활용기반 체계화	454	202	452	250	123.8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2,132	2,868	2,278	△590	△20.6
- OTT산업 경쟁력 강화	600	600	600	0	0.0
○ 방송통신 운영지원	7,427	7,286	7,229	△57	△0.8
-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2,248	2,400	2,400	0	0.0
-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2,356	2,148	2,143	△5	△0.2
- 재난방송 운영지원	2,823	2,738	2,686	△52	△1.9
○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19,092	21,332	20,462	△870	△4.1
-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지원체계 강화	1,159	1,400	1,360	△40	△2.9
-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1,663	1,629	1,466	△163	△10.0
- 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	6,515	6,463	6,140	△323	△5.0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1,100	830	792	△38	△4.6
- 위치정보산업활성화기반구축	1,170	1,970	1,920	△50	△2.5
-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3,177	4,662	4,195	△467	△10.0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3,230	3,230	3,370	140	4.3
- 인터넷이용자보호 지원	1,078	1,148	921	△227	△19.8
- 안전한 Si활용 기반조성	-	-	298	298	순증

주: 음영은 10% 이상 증액사업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안전한 AI활용 기반조성’ 사업은 생성형AI 서비스 이용자가 신고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2억 9,8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방송법 제54조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교육방송 및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예산이 증액되어 2024년도 예산 대비 13억 1,800만원(26.2%) 증가한 63억 5,200만원이 편성됨.
- ‘방송정보활용기반 체계화’ 사업은 방송통계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방송통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등)를 통합·정리하고 주요 통계결과를 시각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송통계자료를 제공해 방송통계의 체계적 활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예산이 신규내역으로 반영되어 2024년도 예산 대비 2억 5,000만원(123.8%) 증가한 4억 5,200만원이 편성됨

II. 검토의견

1. 총괄

- 1)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3132-302)·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3134-317)·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3135-302)·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3251-308):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부적절

○ 방송통신위원회는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업들의 편성 및 수행 방식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을 통해 세부사업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세부사업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의 내역사업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세부사업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의 “방송 국제기구 공동협력사업” 등 6개의 내역사업 및 세부사업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 세부사업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는 「방송법」 제35조의5²⁾에

2) 「방송법」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따라 방송(IPTV 포함)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도보다 1,100만원(△2.4%) 감액된 4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부사업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의 내역사업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은 각종 방송통계를 통합·정리하고 주요 통계 결과를 시각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송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2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부사업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는 방송 국제기구에 대한 자문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 방송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의 신규 통상 이슈 및 국내 법령과의 정합성 분석·검토, 비정치적 분야의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도 21억 4,800만원 대비 500만원(△

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절차·방법,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2%) 감액된 21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세부사업은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이고, 내역사업 “방송 국제기구 공동협력사업”, “방송통신분야 통상대응체계 구축”,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북한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방송공동제작 협력 강화” 등 6개 사업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세부사업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은 신기술의 사회적 위험과 기회, 이용자 권리 침해 가능성과 정부 개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경험적 근거 마련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 및 정책의 현장 적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도보다 3,800만원(△4.6%) 감액된 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KISDI가 수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계획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 (A)	집행액 (실집행액)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379	379 [370]	468	310 [219]	457	△11	△2.4
☐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454	454 [434]	202	134 [100]	452	250	123.8

구 분	2023		2024		2025	증감	증감률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 (A)	집행액 (실집행액)	계획안 (B)	(C= B-A)	(C/A)
○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202	202 [196]	202	134 [100]	202	-	-
□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2,356	2,356 [2,150]	2,148	1,446 [958]	2,143	△5	△0.2
○ 방송 국제기구 공동협력사업	100	100 [96]	90	80 [32]	90	-	-
○ 방송통신 분야 통상 대응체계 구축	300	300 [284]	270	189 [151]	270	-	-
○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90	90 [90]	81	47 [25]	81	-	-
○ 통일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340	340 [306]	306	138 [38]	306	-	-
○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170	170 [166]	153	70 [54]	153	-	-
○ 방송공동제작 협력강화	482	482 [480]	434	272 [101]	434	-	-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	1,100	1,100 [1089.9]	830	549 [351]	792	△38	△4.6
합 계	3,163	3,163	2,834	1,789	2,785	△49	△1.7

주1: 2024년 9월말 기준임.

주2: 내역사업 중 방송국제기구 공동협력사업, 방송통신 분야 통상 대응체계 구축, 남북 방송통신국제컨퍼런스, 통일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북한방송통신이용실태조사, 방송공동제작협력 강화는 매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임.

주3: 합계는 KISDI 수행 사업만 합한 금액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사항: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부적절

- 방송통신위원회는 세부사업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등 여러 세부사업을 통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보조금을 지원

하고 있고, 2021년부터 해당 기관에 편성·집행된 보조금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1년에는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등 6개 세부사업에 40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39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2년에는 47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46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23년에는 41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41억 6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에는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등 6개 세부사업에 36억 3,300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되었고, 2025년에는 4개 세부사업에 27억 8,500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되었음.

< 최근 5년 정보통신연구원에 지급·편성한 보조금 현황(2021~2025) >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명	보조금		보조금 지원 필요성
		예산액(안)	집행액	
2021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465	1,427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379	379	-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300	300	-
	방송평가기반조성	853	853	-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224	224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800	793	-
	소 계	4,021	3,976	
2022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2,082	2,030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379	379	-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300	300	-
	방송평가기반조성	799	799	-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224	223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920	913	-
	소 계	4,704	4,644	

2023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482	1,482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379	379	-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300	300	-
	방송평가기반조성	829	829	-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202	196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920	920	-
소 계		4,112	4,106	
2024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334	-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468	-	-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300	-	-
	방송평가기반조성	499	-	-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202	-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830	-	-
소 계		3,633		
2025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334	-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457	-	-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202	-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	792	-	-
소 계		2,785	-	-

주1: 2024년 9월말 기준임.

주2: 2025년은 예산안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³⁾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출연금 예산을 지급받고 있음.

○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⁴⁾는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별표]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별도 보조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도에 국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수행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수행하는 방통위의 개별사업들이 전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또한, KISDI는 방통위에게 해당 사업들을 KISDI의 출연사업으로 전환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방통위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당 사업들을 보조사업의 형태로 KISDI가 수행토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음.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업들의 편성 및 수행 방식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일반회계

1) 과태료(56-563): 불법스팸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 노력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에 대한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채납관리를 철저히 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과태료(56-563)”는 정보통신망법 영리성광고법규 위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 방송법 위반행위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 세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500만원(1.4%) 증액된 40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과태료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예산안 (D)	증감 (E= D-A)	증감률 (E/A)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징수대비 수납률(C/B)			
☐ 과태료	4,022	39,571	2,061	51.2	0.5	4,077	55	1.4

주: 2024년 9월말 기준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사항: 불법스팸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 노력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수입 중 불법스팸(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송 등)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구체적인 과태료 납부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5.2%, 2019년 8.3%, 2020년 8.5%, 2021년 4.6%, 2022년 7.2%, 2023년 9.1%, 2024년 9월 기준 5.3%로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남.

<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납부실적(2018~2024) >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A)	징수액(B)	징수율(B/A)	불납결손액
2018년	50,217	2,611	5.2	-
2019년	53,401	4,434	8.3	-
2020년	53,464	4,561	8.5	4,319
2021년	45,668	2,106	4.6	-
2022년	45,964	3,316	7.2	5,786
2023년	40,597	3,699	9.1	-
2024년 9월	38,668	2,040	5.3	1,886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018. 9. 28.)을 통해 기존 과기부(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한 불법스팸 과태료 업무를 소속기관(방송통신사무소)을 신설하여 위임함과 동시 체납액이 이체되었는데, 당시의 이체된 체납액이 장기 체납에 해당하여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2018년 9월 당시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 457억원이었고, 2023년말 기준 과태료 체납액은 369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체납 과태료의 90% 이상이 장기체납(5년 이상)이고, 대부분이 무재산·소재불명으로 추정되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 이러한 장기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022년, 2024년에 결손처분을 하였고, 각 연도의 불납결손액은 2020년 43억 1,900만원, 2022년 57억 8,600만원, 2024년 9월 기준 18억 8,600만원임.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기체납 과태료 중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체납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결손처분 할 수 없고 파산을 선고받은 자, 무재산자 등 법령에 근거하여 결손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결손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4조의4⁵⁾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되나,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과태료의 경우 적법한 독촉 등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지속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결손처분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월평균 스팸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4년 과방위 국감에 지적되었으므로,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월평균 스팸신고 건수는 2022년에 317만건, 2023년에 2,458만건, 2024년 상반기에 3,621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임.

< 월평균 스팸신고 증가량 >

(단위: 만 건, %)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월평균 스팸신고량	월평균 스팸신고량	증가율	월평균 스팸신고량	증가율
317	2,458	675.4	3,621	47.3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에 대한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기획조정관(7111-212): 소송비용 증가 등을 고려한 소송비용 관련 예산안 검토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국감에서 과도한 제재처분을 남발하여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증가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 2025년 소송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2024년 9월 기준 부족한 소송비용을 기획조정관 내 일반수용비에서 9,500만원을 활용하고 타 사업에서 6,200만원을 전용하여 총 1억 5,700만원을 초과 집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 관련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기획조정관(7111-212)”은 기획조정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2억 7,0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9.9%) 증액된 13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일반수용비(210-01목)의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7억 2,800만원 대비 7,100만원(9.8%) 증액된 7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기획조정관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실집행액)			
☐ 기획조정관	1,364	1,024	1,270	656	1,396	126	9.9
☐ 비목							
○ 일반수용비(210-01)	742	629	728	413	799	71	9.8

주: 2024년 9월말 기준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사항: 소송비용 증가 등을 고려한 소송비용 관련 예산
안 검토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세부사업 “기획조정관”의 일반수용비(210-01목) 내역 중 “소송관련 등 수수료”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3억 1,600만원의 소송관련 등 수수료가 편성되었고, 2025년 예산안은 이보다 1,000만원 증액된 3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수용비(210-01목) 중 소송비용의 2024년·2025년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2024년 예산 산출 내역		2025년 예산(안) 산출 내역	
일반수용비(210-01목)	728	일반수용비(210-01목)	799
○ 소송관련 등 수수료		○ 소송관련 등 수수료	
• 소송 비용 : 235	316	• 소송 비용 : 245	326
• 기타 수수료: 81		• 기타 수수료: 8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이와 관련하여 2024년에 소송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2024년 9월 말 기준 2024년 예산 2억 3,500만원보다 1억 5,700만원 초과된 3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관 내 일반수용비로 9,500만원, 운영지원과 유류비 2,200만원 등 타 사업에서 전용한 6,200만원 등 1억 5,700만원임.

< 2024년 소송비용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비고(전용 등)	
2024	235	392	62	운영지원과 유류비: 22 운영지원과 기타운영비: 19 (전용) 운영지원과 직책수행경비: 13 방송기반국 일반수용비: 8
			95	기획조정관 내 기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활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2025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39건으로, 향후 소송비용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임.

- 아래 2024년 이후 진행된 소송진행 현황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피고이며, 소송비용은 착수금 등으로 이미 집행된 내역임.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소송진행 현황>

(단위: 백만원)

소제기일	사건명	소송대리인	소송 현황	원고	소송 비용
'24.1.15.	방송광고 결합판매 자원고시 처분취소	1심인	진행 중	주식회사 와이트엔디엠비	5.5
'24.2.7.	제재조치 처분취소	1심 도사와탐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14.3
'24.2.13.	제재처분취소	1심 도사와탐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14.3
'24.2.13.	차익배출자변경 승인 처분취소	1심 법무법인 린	진행 중	전국농민노동조합YIN지부, 와이트엔 유리스주조합	17.6
'24.2.23.	제재조치 처분취소	1심 도사와탐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14.3
'24.2.23.	과징금 부과 등 처분취소	1심 도사와탐	진행 중	제이티브씨 주식회사	14.3
'24.2.23.	과징금 부과 등 처분취소	1심 도사와탐	진행 중	제이티브씨 주식회사	14.3
'24.2.23.	제재조치 처분취소	1심 도사와탐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14.3
'24.2.26.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1심 송우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7.7
'24.2.28.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1심 도사와탐	진행 중	주식회사 와이트엔	14.3
'24.2.28.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1심 도사와탐	진행 중	한국방송공사	14.3
'24.3.25.	제재처분취소	1심 도우화산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9.9
'24.4.6.	제재조치 처분취소	1심 도우화산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9.9
'24.4.7.	제재조치 처분취소	1심 도우화산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9.9
'24.4.22. '24.10.15.	해임 처분취소	1심 정부법무공단 2심 정부법무공단	진행 중	OOO	7.7
'24.5.24.	시장명령 취소	1심 법무법인 아체	진행 중	제이티브씨 주식회사	11
'24.5.27.	제재조치 처분취소	1심 법무법인 강변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6.6
'24.5.27.	제재조치 처분취소	1심 법무법인 강변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6.6
'24.5.27.	제재조치 처분취소	1심 법무법인 강변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6.6
'24.5.27.	제재조치 처분취소	1심 법무법인 강변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6.6
'24.5.28.	제재조치 처분취소	1심 법무법인 강변	진행 중	재단법인 싸바에스	6.6

소제기일	사건명	소송대리인	소송 현황	원고	소송 비용
'24.6.11.	제재조치 처분취소	다엘지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6.6
'24.6.12.	제재조치 처분취소	다엘지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6.6
'24.6.20.	제재조치 처분취소	다킴로펌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6.6
'24.6.20.	제재조치 처분취소	다킴로펌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6.6
'24.6.21.	제재조치 처분취소	다킴로펌	진행 중	재단법인 싸비에스	6.6
'24.6.21.	제재조치 처분취소	다킴로펌	진행 중	울산문화방송 주식회사	6.6
'24.6.21.	제재조치 명목취소	다킴로펌	진행 중	주식회사 와이타엔라디오	6.6
'24.7.1.	제재조치 처분취소	법무법인 로얄	진행 중	재단법인 싸비에스	6.6
'24.7.1.	제재조치 처분취소	법무법인 로얄	진행 중	재단법인 싸비에스	6.6
'24.7.1.	제재조치 처분취소	법무법인 로얄	진행 중	재단법인 기톨릭평화방송	6.6
'24.7.1.	제재조치 처분취소	법무법인 로얄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6.6
'24.7.1.	제재조치 처분취소	법무법인 로얄	진행 중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	6.6
'24.7.2.	제재조치 처분취소	법무법인 로얄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6.6
'24.8.1	이사임명 처분 취소	도움 이모 해방	진행 중	○○○	13.2
'24.8.5.	이사임명 처분 무효 등 확인	도움 이모 해방	진행 중	○○○	13.2
'24.8.9.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법무법인인	진행 중	주식회사 싸앤티크	
'24.8.20.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법무법인 다엘지	진행 중	주식회사 문화방송	
'24.8.27.	이사임명 무효 확인 등	법무법인 해방	진행 중	○○○	

주: 소송비용 내역이 없는 3건은 향후 착수금이 집행될 예정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에 대해 2024년에 제기된 39건의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상급심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 이에 대하여 2024년 과방위 국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위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과도한 제재처분을 남발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2024년 예산도 과도하게 전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국감에서 과도한 제재처분을 남발하여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증가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 2025년 소송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2024년 9월 기준 부족한 소송비용을 기획조정관 내 일반수용비에서 9,500만원을 활용하고 타 사업에서 6,200만원을 전용하여 총 1억 5,700만원을 초과 집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 관련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법정위원회 운영(7131-30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에 맞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 보수 예산 반영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2025년 예산 편성시 상임위원 5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법정위원회 운영(7131-304)”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책수립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억 4,400만원보다 5,800만원(40.3%) 증액된 2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사업 예산으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등 10개의 법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2025년도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법정위원회 운영	152	135	144	91	202	58	40.3

주: 2024년 집행액은 2024년 7월 말 기준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사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에 맞는 통신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 보수 예산 반영 필요

○ 동 사업으로 운영되는 10개의 법정위원회 중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6)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전

6)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약관, 품질 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2018년에 신설되었고, 신설 당시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제1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6월 12일부터 2021년 6월 11일까지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운영되었고,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6월 12일부터 2023년 6월 11일까지 위원장 포함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당초 위원장 포함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었던 근거 조문이 위원장 포함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되었음.

⑥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당 「전기통신사업법」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적용례7)에 따라 2023년 7월 이후 구성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부터 적용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법 개정 이후인 2023년 7월 이후에 구성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하여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제2항 종전 및 현행 규정 >

종전	현행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개정 이후인 2024년 10월 현재 기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16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법 개정 이후 구성된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의 위원은 2023년 8월 21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

7) 부 칙 <법률 제19153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 임기이고, 2024년 2월 27일에 추가로 6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추가 위촉 위원들의 임기는 2026년 2월 26일까지임.

- 당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985)」이 발의된 것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되었으나 위원 수 부족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용자 불만이 계속되고, 법정처리 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임.
-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분쟁조정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5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법 규정 30명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데, 현재 16명의 비상임위원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법에서 규정된 5명이 아닌 2명에 대한 부분만 편성한 문제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근거로 편성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월 399만원을 6개월 동안 2명의 상임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 4,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상임위원 인건비 관련 2025년 예산안 >

구 분	내 용	예 산
상임위원 인건비 (2인/6개월)	- 보 수: 48백만원 (3,990천원x6개월x2명) - 퇴직급여 적립금 : 3.9백만원(48,000천원 x 8.33%) - 4대 보험료: 5.37백만원 (48,000천원 x 11.21%) * 기본급 3,500천원* + 기타수당 490천원	58백만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그런데 개정된 법 문언은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라고 하여, 상임위원 수에 대한 재량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지 않고, 이미 개정 법률이 시행되어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을 위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2025년 예산안에 2명에 해당하는 보수만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2025년 예산 편성시 상임위원 5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4)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2141-309): 불법스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ISP 예산 반영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월평균 스팸신고 건수 증가 추세에 기존 시스템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 국회 과방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국감 지적사항의 취지 및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스팸대응시스템 기능 고도화 ISP의 예산 반영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2141-309)”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 처리를 위해 신고 접수된 불법스팸의 법 위반 여부 등 사실조사 및 스팸 관련 민원 상담·접수를 지원하는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00만원(△0.6%) 감액된 32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는 휴대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발송되는 스팸의 신고·접수, 처리, 차단, 공유 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팸대응시스템을 운영 및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5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3,291	3,291 [3,098]	3,221	2,319 [1,996]	3,201	△20	△0.6
○ 불법스팸 고충처리	1,165	1,165 [1,054]	1,165	585 [585]	1,165	-	
○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1,613	1,613 [1,567]	1,590	1,323 [1,000]	1,590	-	
○ 스팸방지 인식제고 및 법제연구 등	513	513 [477]	466	411 [411]	446	△20	△4.3

주: 2024년 9월 말 기준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사항: 불법스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ISP 예산 반영 필요

- 내역사업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의 2025년 예산안은
①스팸대응시스템 운영 13억 5,200만원, ②스팸대응시스템 고도화 2억 3,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②스팸대응시스템 고도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시스템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것임.

< 내역사업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2024년 및 2025년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2024년 예산 산출 내역		2025년 예산(안) 산출 내역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1,590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1,590
○ 스팸대응시스템 운영·관리		○ 스팸대응시스템 운영·관리	
• 하드웨어·사용SW 운영·유지관리 용역비 235		• 하드웨어·사용SW 운영·유지관리 용역비 235	
• 응용SW 운영·유지관리 용역비 500	1,352	• 응용SW 운영·유지관리 용역비 500	1,352
• 스팸대응시스템 등 운영비 308		• 스팸대응시스템 등 운영비 308	
• NW회선료, 본인확인 수수료 등 309		• NW회선료, 본인확인 수수료 등 309	
○ 스팸대응시스템 고도화		○ 스팸대응시스템 고도화	
• 시스템 장비 교체·확충 등 238	238	• 시스템 장비 교체·확충 등 238	238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스팸대응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월평균 스팸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월평균 스팸신고 건수는 2022년에 317만건, 2023년에 2,458만건, 2024년 상반기에 3,621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임.

< 월평균 스팸신고 증가량 >

(단위: 만 건, %)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월평균 스팸신고량	월평균 스팸신고량	증가율	월평균 스팸신고량	증가율
317	2,458	675.4	3,621	47.3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 또한, 2023년 과방위 결산심사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스팸대응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세사업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량문자 사업자 진입장벽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된 바 있음.
- 2024년도 과방위 국감에서 스팸 문자 관련 방통위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스팸문자 대응 대책과 관련하여, 급증한 스팸신고 데이터의 안정적 접수·처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시스템 보강 및 고도화가 시급한 상황이고, 이러한 시스템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에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구체적으로, ① 스팸데이터 분석·공유기능 강화, ② DB 구조개선, ③ 스팸차단·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④ 통합 관리기능 개선 등 시스템 고도화에 19억 2,000만원, 인프라 확충에 7억 6,100만원 등 26억 8,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 다만,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서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ISP·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

어⁸⁾, 스팸대응시스템 기능 고도화의 경우에도 ISP 수립 예산을 먼저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월평균 스팸신고 건수 증가 추세에 기존 시스템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 국회 과방위 결산 시정 요구사항·국감 지적사항의 취지 및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스팸대응시스템 기능 고도화 ISP의 예산 반영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45.

5) EBS 방송인프라 개선(2171-303): UHD 정책을 조속히 마련
하여 동 사업 예산과 연계할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이 UHD 방송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연계되어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심의되고, EBS도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UHD 전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UHD 방송 도입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EBS 방송인프라 개선(2171-303)”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⁹⁾에 따라 EBS의 노후 방송장비, 시스템을 보완하고 UHD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송인프라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교육방송을 안정적으로 제작함으로써 전국민의 평생 교육 진흥과 시청자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13억 2,200만원 대비 1억 1,200만원(△8.5%) 감액된 12억 1,000만원임.

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出捐額)
2.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2025년도 EBS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실집행액)			
□ EBS 방송인프라 개선	1,652	1,603 [1,603]	1,322	571	1,210	△112	△8.5
○ 방송제작시스템	1,600	1,551 [1,551]	730	273	655	△75	△10.3
○ 네트워크시스템	52	52 [52]	592	298	555	△37	△6.3

주: 2024년 9월말 기준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사항: UHD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동 사업 예산과 연
계할 필요

○ EBS는 정부의 UHD방송 도입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단계적
으로 UHD 송출시스템, UHD 제작시스템, UHD 네트워크시스템
에 대하여 연도별로 투자하고 있음.

- 2015년 12월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20년
12월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UHD 송출시스템, UHD 제
작시스템, UHD 네트워크시스템 등에 투자하고 있고, 2027년

까지 보조금 525억 7,100만원, EBS 자체재원 116억 4,100만원 등 총 642억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투자한 총 금액은 200억 2,000만원이고, 향후 2025~2027년 3년간 계획된 투자금액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441억 9,200만원이며, 2027년까지 투자를 완료할 계획임.

< EBS UHD 방송인프라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실적)	'23년 (실적)	'24년 (계획)	'25년	'26년	'27년	합계
재원	보조금	-	1,236	3,297	2,799	2,245	2,148	1,915	1,603	1,322	10,351	14,163	11,492	52,571
	자체	187	1,248	-	46	-	-	1,482	292	200	1,928	2,892	3,366	11,641
합계		187	2,484	3,297	2,845	2,245	2,148	3,397	1,895	1,522	12,279	17,055	14,858	64,212

주: 2024년 9월말 기준임.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 이러한 투자계획에 따르면, “EBS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의 예산은 2025년 보조금 103억 5,100만원이 편성되어야 하나, 2025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12억 1,000만원만 반영되어 있음.
- 이렇게 정부의 UHD방송 도입계획과 EBS의 UHD 방송인프라 연도별 투자 계획이 일치하지 않고, 매년 EBS의 방송인프라 투

자계획이 수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UHD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반 및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UHD 정책방안 마련 시 EBS의 UHD 전환 계획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 하지만, 올해 10월 현재 정책연구반 등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올해 말에 나올 경우, 정부의 UHD 정책 방향이 수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 예산이 먼저 편성되는 상황이 되고, EBS의 UHD 전환계획은 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정될 수 밖에 없음.
- 또한, 국회 과방위에서 2023년 결산심사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현실적인 UHD 방송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합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이 UHD 방송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연계되어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심의되고, EBS도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UHD 전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UHD 방송 도입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방송통신발전기금

1)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3135-301): 연례적인 정책연구비 수 의계약 과다 개선 필요

- 연례적으로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
구용역비에 대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
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3135-301)”는 방송통신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산·학·연 주관 세미나를 지
원하는 것으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도 24억원과 동일함.

- 내역사업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
경변화에 대응하고 방통위 주요 업무를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
해 방송통신 주요 정책 수립 전 전문적인 조사·연구, 국내외
사례 파악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22억 5,000만원임.

＜ 2025년도 방송통신융합정책 연구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증감	증감률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 (A)	집행액 (실집행액)	계획안 (B)	(C= B-A)	(C/A)
☐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2,300	2,248	2,400	1,527	2,400	-	-
○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	2,150	2,130	2,250	1,464	2,250	-	-
○ 방송통신 학술 행사 지원 등	150	118	150	63	150	-	-
☐ 비목							
○ 일반수용비(210-01)	10	8	10	5	10	-	-
○ 정책연구비(260-02)	2,290	2,240	2,390	1,522	2,390	-	-

주: 2024년 9월말 기준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사항: 연례적인 정책연구비 수의계약 과다 개선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역사업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인데, 해당 연구용역계약의 수의계약 비중이 연례적으로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가 있음.
- 최근 5년간 정책연구과제 중 단독입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계약의 과제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69.4%, 2021년 71.8%, 2022년과 2023년 67.6%, 2024년은 72.5%¹⁰⁾로, 전체 과제의 2/3 이상이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

¹⁰⁾ 2024년 9월말 기준임.

< 최근 5년 정책연구과제 경쟁·단독입찰 현황(2020~2024) >

(단위: 건, %)

연도	전체 과제 건수	경쟁입찰		단독입찰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0	36	11	30.6	25	69.4
2021	39	11	28.2	28	71.8
2022	37	12	32.4	25	67.6
2023	37	12	29.6	25	67.6
2024	40	11	27.5	29	72.5

주: 2024년 9월말 기준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2024년에 진행된 40개 과제의 경쟁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입찰(1:1)이 29건이고 경쟁입찰이 11건인데, 경쟁입찰의 경쟁률도 8건은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3건도 3:1의 경쟁률에 불과하였음.
- 정책연구비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안편성지침¹¹⁾에서 편성시 2023년도 결산실적을 감안하여 지출한도에 맞추어 편성하도록 하고, 2024년도 예산집행지침¹²⁾에서 반드시 수의계약을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 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제한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불필요한 정책연구의 수행을 지양하고, 경쟁계약을 통해 경쟁력 있는 수행기관이 정책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11)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49

12)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86.

○ 이러한 정책연구용역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입찰자가 부족하여 1:1 수의계약 비중이 과도한 것은, 해당 분야에 편성된 정책연구용역비 전체 규모가 과다하기 때문이 아닌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연례적으로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3132-317): 신규 반영된 국제컨퍼런스 계획 구체화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편성된 국제컨퍼런스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이 심사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국제 컨퍼런스 행사경비를 경비의 성질에 따라 세분화하여 작성하는 등 신규 반영된 국제 컨퍼런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3132-317)”은 허위 정보가 생산·유통·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대상 정보판별 교육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해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도 10억 2,700만원 대비 3억 7,400만원(△36.4%) 감액된 6억 5,300만원임.
- 내역사업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는 허위정보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 국민 대상 정보판별 교육 운영과 국제협력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6억 6,700만원)보다 1억 9,500만원(△29.1%) 감액된 4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계 획 안 (B)	증 감 (C= B-A)	증 감 륜 (C/A)
	계 획 액	결 산 액	계 획 액 (A)	집 행 액 (실집행액)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610	313 [300]	1,027	631 [235]	653	△374	△36.4
○ 팩트체크 활성화	300	3	357	270 [11]	178	△179	△50.1
○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	310	310 [300]	670	361 [224]	475	△195	△29.1
☐ 비목							
○ 민간경상보조(320-01)	610	313 [300]	983	631 [235]	653	△330	△33.6
○ 국제부담금(340-02)	-	-	44	-	-	순감	순감

주: 2024년 9월 말 기준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사항: 신규 반영된 국제컨퍼런스 계획 구체화 필요

○ 내역사업 “허위정보 대응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제고”는 2025년에 전년도 내역과 상이하게 1억 4,000만원의 국제컨퍼런스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동 내역사업의 2024년 예산 산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국제부담금 4,400만원과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보조사업비(보조사업자: 시청자미디어재단) 1,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국제부담금은 OECD 허위조작정보 연구허브 분담금이고, 보조사업비는 “제3회 허위정보 예방 시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임.

- 반면,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에 수행했던 사업은 반영되지 않고,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집행될 계획임.

< 내역사업 “허위정보 대응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제고” 2024년 및 2025년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

2024년 예산 산출 내역		2025년 예산(안) 산출 내역	
허위정보 대응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제고	59백만원	허위정보 대응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제고	140백만원
○ 국제부담금(340-02) • 국제협력 강화: 44백만원×1식	44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대국민 인식제고: 15백만원×1식	15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 국제컨퍼런스 개최: 140백만원×1식	140백만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신규 편성된 국제 컨퍼런스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국제 컨퍼런스(가칭)”로 허위조작정보 발생 및 유포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적·기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성하기 위한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국제 컨퍼런스를 2025년 10월~11월경에 대형 회의실을 대관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참가대상은 OECD 회원국 정책 담당자, 미디어 교육 및 팩트체크 글로벌 전문가 등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 또한, 신규 편성 예산 1억 4,000만원 중 7,000만원은 회의장 등 임차료, 행사운영비에 사용될 예정이고, 나머지 7,000만원은 국내외 연사 초청, 자문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 국제컨퍼런스 2025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2025년 예산(안) 산출 내역	
· 국제컨퍼런스 개최: 140백만원×1식	140백만원
· 회의장 등 임차료, 행사운영비 등: 1건 × 70	70백만원
· 국·내외 연사 초청비, 자문비 및 인건비 등: 28인 × 2.5	70백만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이러한 행사비와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지침」은 행사경비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예산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업비 총액만을 작성한 후 행사주관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¹³⁾

13)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78.

- 이에 따라 동 국제 컨퍼런스 역시 경비의 성질에 따라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행사경비 1억 4,000만원을 절반으로 나누어 임차료 등과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제시하였으나, 경비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편성된 국제컨퍼런스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이 심사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국제 컨퍼런스 행사경비를 경비의 성질에 따라 세분화하여 작성하는 등 신규 반영된 국제 컨퍼런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3)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3251-318): 법령 정비 미비에 따른 실태점검 예산 조정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한 연계정보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 12개월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3251-318)”은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앱접근권한 등 실태점검, 정책개발, 본인확인서비스 보급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도 계획액 32억 3,0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4.3%) 증액된 3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는 안전하게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취약점진단 등 관리감독 수행 및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심사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1억 4,000만원(9.0%) 증액된 1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계획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 (A)	집행액 (실집행액)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3,230	3,230 [2,920]	3,230	2,034 [1,877]	3,370	140	4.3
○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1,550	1,550 [1,444]	1,550	1,126 (1,029)	1,690	140	9.0

주: 2024년 9월말 기준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사항: 법령 정비 미비에 따른 실태점검 예산 조정 필요

○ 내역사업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는 2025년에 연계정보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 및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심사를 위한 예산 1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음.

○ 해당 신규 예산안은 2024년 1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¹⁴⁾ 및 제23조의6(연계정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 또는 제공·이용·대조·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

보의 안전 조치 의무 등)¹⁵⁾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이용자 식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계정보 생성·처리를 요청한 경우

나. 행정기관등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처리를 요청한 경우

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처리를 요청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의 생성·처리를 승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2.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받은 경우에는 동의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승인취소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시행일 미지정] 제23조의5제1항제3호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 조치 의무 등) ①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생성·처리하는 연계정보의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임.

-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¹⁶⁾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¹⁷⁾(KT, 국민은행, 나이스평가정보, 삼성카드 등)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기관 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임.
- 연계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¹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

⑤ 제1항에 따른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16)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연계정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

17)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8)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고지문을 발송하는 서비스

조제3항19)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임시허가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였으나, 2019년에 부여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최장 4년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음.

○ 신규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연계정보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2명×12개월)를 1억 3,200만원 편성하였고, ②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를 위한 전문가활용비 등 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우선 ①연계정보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6제3항에 그 근거가 신설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1억 3,200만원은 연계정보 이용기관을 대상²⁰⁾으로 연계정보의 유·노출 위험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임.

- 또한, ②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에 그 근거가 신설되었고, 관련 예산 800만원은

1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임시허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0) 점검 대상기관은 본인확인기관 24개사, 연계정보 이용기관 약 3만 8,000여개임.

연계정보 생성·기존 임시허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모바일 전자고지(17사),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69사) 및 기타 신규 신청 서비스에 대한 승인심사에 소요되는 예산임.

< 내역사업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2024년 및 2025년 예산(안) 편성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2024년 예산 산출 내역		2025년 예산(안) 산출 내역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1,550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1,690
○ 본인확인기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점검 실시 • 본인확인기관 관리감독 : 25개사×62백만원 (현장실사 207, 취약점 진단 207, 모의침투 207)	1,550	좌동	1,550
<신 규>	-	○ 연계정보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 및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 실태점검 수행(5.5백만 x 2명 x 12개월) =132백만원 •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전문가 활용비 30만원×5인+임차료 30만원 +사업수행비 30만원)×4회 =8백만원	14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이러한 ①연계정보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 및 ②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위한 예산안은 2024년 7월부터 근거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다만,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제23조의6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문이 다수 있어,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제5항은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승인 절차,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승인취소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6제4항은 실태점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러한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2024년 10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위원회 전체회의가 불가능한 상황임.
-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고, 법제처 심사도 사전에 완료하였다고 하였으나, 현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회할 수 없어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시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기준 부위원장 1인 체제라는 점,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실태점검을 2025년 1월부터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한 연계정보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 12개월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3132-310): 대국민 홍보 예산 편성의 적절성 재검토 필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상비”에 편성된 대국민 홍보 콘텐츠 제작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간독립기구 홍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딥페이크성범죄 등과 연계되어 필요하다면 내역사업 “방송심의 활동” 및 “통신심의 활동”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3132-310)”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및 법정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억 7,600만원(0.5%) 증액된 367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동 세부사업 예산은 전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지급됨.
- 내역사업 “경상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 및 5개 지역사무소 운영 기본경비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억 6,400만원(3.2%) 증액된 5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 “방송심의 활동”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심의 등 법정직무 수행경비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대보다 8억 800만원(11.0%) 감액된 65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 “통신심의 활동”은 불법·유해정보 심의 및 분쟁조정 등 법정직무 수행경비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대보다 1억 6,900만원(5.3%) 증액된 3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계 획 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C/A)
	계 획 액	결 산 액	계 획 액 (A)	집 행 액 (실집행액)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36,824	36,593 [35,349]	36,560	25,094 [18,801]	36,736	176	0.5
○ 경 상 비	5,194	5,194 [5,036]	5,186	4,150 [2,792]	5,350	164	3.2
○ 방송심의 활동	7,958	7,868 [7,669]	7,346	4,469 [3,494]	6,538	△808	△11
○ 통신심의 활동	3,455	3,425 [3,246]	3,211	2,413 [1,353]	3,380	169	5.3

주: 2024년 9월 말 기준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사항: 대국민 홍보 예산 편성의 적절성 재검토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역사업 “경상비”의 세부 내역으로 “민생 관련 위원회 주요 직무 대국민 홍보 콘텐츠 제작”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의 중요성에 비해 대외 홍보 예산 부족으로 대국민 소통이 부족하여 동 예산의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2025년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홍보 콘텐츠 제작 9,000만원, SNS 운영·홍보 등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민생 관련 위원회 주요 직무 대국민 홍보 콘텐츠 제작” 2025년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안) 산출 내역	
경상비	5,350
○ 민생 관련 위원회 주요 직무 대국민 홍보 콘텐츠 제작	
• 홍보 콘텐츠 제작 90	150
• SNS 운영·홍보 등 6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홍보비를 방심위의 “경상비” 내역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홍보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홍보비를 방심위의 “경상비” 내역으로 편성하였는데, 내역사업 “경상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 및 5개 지역사무소 운영 기본경비로, “경상비”의 내역으로 홍보비를 편성하는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 될 수 있음.
 -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²¹⁾에 따라 설치된 민간독립기구임.
 - 따라서, “경상비”의 내역으로 홍보비를 편성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민간독립기구에 대해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에 따라 해당 경비가 방송내용의 공공성·시청자권익보호 및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안내 등 정책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이라면 같은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방송심의 활동” 및 “통신심의 활동”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홍보비에 대해서 방송 관련 소비자 오인 등 권익침해 내용에 대한 업무 설명,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24시간 신고창구 안내 등 민생침해 유형별 홍보 영상·카드뉴스 등을 제작하고, 유튜브 등 SNS 전문 홍보업체를 활용해 피해구제의 시급성 및 피해확산 방지 방안 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음.
- 이러한 설명에 따라, 동 홍보비가 홈쇼핑·광고 등의 소비자 기만·오인 예방 및 딥페이크성범죄 등의 정책과 관련된 홍보비로 사용될 계획이라면, 방심위 운영경비에 해당하는 “경상비”보다는 같은 세무사업 중 방송에서의 시청자권익보호 및 딥페이크성범죄 등의 관련된 사업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내역사업 “방송심의 활동” 또는 “통신심의 활동”에 각각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상비”에 편성된 대국민 홍보 콘텐츠 제작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간독립기구 홍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딥페이크성범죄 등과 연계되어 필요하다면 내역사업 “방송심의 활동” 및 “통신심의 활동”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3132-311): 성과지표
‘방송광고 법규준수율’의 개선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과방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맞게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사업의 2025년도 성과지표를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3132-311)”은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및 비상업적 공익 광고 편성비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처분을 통해 과도한 방송광고·협찬고지로부터 방송의 공익성 및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도 17억 7,000만원 대비 1억 3,000만원(△7.3%) 감액된 16억 4,000만원임.

< 2025년도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계 획 안 (B)	증 감 (C= B-A)	증 감 륜 (C/A)
	계 획 액	결 산 액	계 획 액 (A)	집 행 액 (실집행액)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 구축	1,743	1,743 [1,642]	1,770	1,115 [800]	1,640	△130	△7.3

주: 2024년 9월 말 기준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사항: 성과지표 ‘방송광고 법규준수율’의 개선 필요

○ 세부사업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은 성과지표 ‘방송광고 법규준수율’을 통하여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있고, 2025년 목표치는 “89%”임

- 성과지표 ‘방송광고 법규준수율’은 2023년 목표 88건 중 87.8건의 실적을 보여, 성과달성률은 99.7%임.

- 해당 성과지표는 “{전체 채널수-[(1회 위반 방송채널수x1.0)+(2회 위반 방송채널수x1.5)+(3회 이상 9회 이하 위반 방송채널수x2.0)+(10회 이상 위반 방송채널수x3.0)]/전체채널수}x100”의 산식을 통해 측정하고 있고, 이 중 위반 방송채널의 건수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모니터링에 적발된 건수에 해당함.

< 성과지표 ‘방송광고 법규준수율’의 2025년도 성과계획(안) >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방송광고 법규준수 율 (%)	목 표	88	89	88	88	89	개정된 규제 기준 장착화로 전년대비 1% 상향 목표	{전체 채널수-[(1회 위반 방송채널수x1.0)+(2회 위반 방송채널수x1.5) +(3회 이상 9회 이하 위반 방송채널수x2.0)+ (10회 이상 위반 방송채널수x3.0)]/전체채 널수}x100	행정처분 자료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실 적	88.3	80.3	87.8	-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과방위 결산심사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의 성과지표를 위반횟수와 성과지표가 높은 비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된 바 있음.

- 해당 성과지표는 측정산식이 복잡하고, 측정의 기초가 되는 방송광고 법규 위반횟수별 채널수가 대부분이 1회 위반에 해당하며, 3.0의 가중치가 부과되는 10회 위반은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 실제 성과와 연계성이 높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 최근 3년 방송광고 법규 위반횟수별 채널수(2023) >

구분	전체 채널수	1회 위반	2회 위반	3~9회 위반	10회 위반
2021년	303	25	4	2	-
2022년	295	36	8	5	-
2023년	305	29	4	1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성과지표 타당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법규준수율 지표를 축소하고 법규준수율 개선 노력도 지표를 신설하였으나, 기존 법규준수율 지표의 측정산식이 복잡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과방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맞게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사업의 2025년도 성과지표를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3134-301): 방송대상 시상금에 대한 법령상 근거 미비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법령에 지급 근거 및 지급한도를 두지 않고 편성·집행되고 있는 방송대상시상금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등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3134-301)”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함으로써 방송제작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콘텐츠 제작활동을 활성화하여 시청자의 만족도 향상과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보다 2,000만원(△6.5%) 감액된 2억 9,000만원임.
- 내역사업 “방송대상시상금”은 방송대상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및 특별상 등 수상작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원이 포상금(310-03)목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계 획 안 (B)	증 감 (C=B-A)	증 감 률 (C/A)
	계 획 액	결 산 액	계 획 액 (A)	집 행 액 (실집행액)			
☐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	310	296	310	96	290	△20	△6.5
○ 방송대상시상금	100	100	100	-	100	-	-
☐ 비목							
○ 포상금(310-03)	100	100	100	-	100	-	-

주: 2024년 9월 말 기준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사항: 방송대상 시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내역사업 “방송대상시상금”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의 수상작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대통령상) 15편의 수상작에 대하여 총 1억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 2024년에는 대상(대통령상) 1편(2,000만원),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편(1,200만원), 우수상(위원장상) 8편(각 600만원), 특별상(위원장상) 5편(각 4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25년에는 우수상 및 특별상의 내역을 변경하여 우수상(위원장상) 9편(각 6백만원), 특별상(위원장상) 4편(각 3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임.

< 내역사업 “방송대상시상금” 2024년 및 2025년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2024년 예산 산출 내역		2025년 예산(안) 산출 내역	
방송대상시상금	100	방송대상시상금	100
○ 포상금(310-03)		○ 포상금(310-03)	
• 대상(대통령상) 20(1편 x 20백만원)		• 대상(대통령상) 20(1편 x 20백만원)	
•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2(1편 x 12백만원)	100	•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2(1편 x 12백만원)	100
• 우수상(위원장상) 48(8편 x 6백만원)		• 우수상(위원장상) 54(9편 x 6백만원)	
• 특별상(위원장상) 20(5편 x 4백만원)		• 특별상(위원장상) 14(4편 x 3.5백만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대상시상금은 포상금(310-03목)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데, 「예산집행지침」은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²²⁾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포상금의 법적근거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16호²³⁾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들고 있어, 사실상 해당 포상금의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22)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95.

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세종문화상 포상금, 국악경연대회 포상금 등을 편성·집행하고 있는데, 해당 포상금의 경우에는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그 지급근거를 법령에 두고 있음.

- 방송대상시상금의 규모와 유사하게 총 상금 5천만원이 초과하는 포상금 편성 사례를 살펴보면, 세종문화상 포상금(총 9,000만원)의 경우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지급근거를 두고 있고, 국악경연대회 시상금(총 6,400만원)의 경우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국악경연대회의 근거를 두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포상금(310-03) 편성 사례 >

내역	사업명	시상내역	법적 근거
세종문화상 포상금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 지급수량 및 금액 5점 / 각 3천만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5조 ²⁴⁾
국악경연대회	국립국악원 운영	○ 온나라 국악경연대회(32백만원),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16백만원), 국악동요제(16백만원)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5조 ²⁵⁾

24)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① 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글날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글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한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25)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5조(국악의 날) ① 법 제14조에 따른 국악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의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1.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경연대회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유공자 포상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법령에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두지 않고 편성·집행되고 있는 방송대상시상금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등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을 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3134-303): 내역사업 “공익
광고 제작 및 확산” 예산 조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의 동 내역사업을 통한 공익광고 제작·확산의 필요성에
도 불구하고 32.5% 감액된 동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KOBACO의 경영
환경 변화 및 건전재정기조에 따라 감액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동 내역사업 예산 조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3134-303)”은 방송광
고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
하고, 방송광고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보다 5억 1,700만원(△21.1%) 감액된 19억 3,200만원이 편성되
었음.

- 내역사업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주제
로 공익광고를 제작·방영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실천의식
확산을 유도하고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려
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5억 1,700만원(△
32.5%) 감액된 10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계 획 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C/A)
	계 획 액	결 산 액	계 획 액 (A)	집 행 액 (실집행액)			
☐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	2,449	2,449 [2,360]	2,449	1,469 [1,061]	1,932	△517	△21.1
○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1,592	1,592 [1,510]	1,592	955 [593]	1,075	△517	△32.5
☐ 비목							
○ 민간경상보조(320-01)	1,592	1,592 [1,510]	1,592	955 [593]	1,075	△517	△32.5

주: 2024년 9월 말 기준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사항: 내역사업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예산 조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내역사업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가 보조사업자로, 해당 보조금 예산과 코바코 자체 예산으로 공익광고를 제작·방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부내역 중 공익광고 주제선정 및 효과평가 조사, 공익광고협의회 운영 등 5억 1,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 2024년과 비교할 때, 2025년 예산안에는 공익광고 주제선정 및 효과평가 조사, 공익광고협의회 운영, AIE 현장교육 등, 온

오프라인 프로모션,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예산이 삭감되어 있고, 청년자문단 운영 예산 700만원이 신규반영되었음.

<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2025년 예산안 세부 편성 항목 비교 >

(단위: 백만원, %)

사업 내역	2023 예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C=B-A)	비중 (C/A)
○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1,592	1,592	1,075	△517	△32.5
♦ 공익광고 제작	781	좌동	607	△174	△22.3
- TV 공익광고 제작	150백만원X4편 = 600백만원	좌동	150백만원X4편 = 600백만원		
- 공익광고 주제선정 및 효과평가 조사	주제선정 3천명×3,780원×3회, 효과평가 1천명×5,710원×7편 = 74백만원	좌동	-	△74	
- 공익광고합의회 운영	회의참석수당 30만원×20명×16회, 제작지문료 15만원×7회 = 107백만원	좌동	-	△107	
- 청년자문단 운영	-	좌동	청년자문단 지문료 등 1백만원X7명 = 7백만원	7	
♦ 공익광고 확산	811	좌동	468	△343	△42.3
- 인터넷, 모바일, 극장 등 광고집행	39백만원×12월 = 468백만원	좌동	좌동	-	
- AIE 현장교육	현장교육 1식×3백만원, 자유학년제 1식×15백만원 = 18백만원	좌동	-	△18	
- 오프라인 프로모션 등	1식× 25백만원 = 25백만원	좌동	-	△25	
-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300백만원	좌동	-	△300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감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과는 연관성이 없고, 다만 건전재정기조에 따라 일부 감액하여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재무예산성과 지표 하락(2022년 66.718점 → 2023년 40.182점, △26.536점), 방송광고 영업경쟁력 강화 지표 하락(2022년 95.591점 → 2023년 43.970점, △51.621점)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재무예산성과 지표, 방송광고 영업경쟁력 강화 지표가 급락한 것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지상파 광고매출이 급락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매출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 한편, 동 내역사업은 2014년부터 KOBACO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고, 2014년부터 평균적으로 KOBACO 자체 예산이 42.9%, 방송통신발전기금이 5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내역사업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 예산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구성비
기금예산 지원	2,000	2,000	2,150	2,150	2,080	1,768	1,768	1,768	1,592	1,592	1,592	57.1
KOBACO 자체	1,437	1,437	1,881	1,601	1,506	1,262	1,267	1,267	1,267	1,267	1,203	42.9
합계	3,437	3,437	4,031	3,751	3,586	3,030	3,035	3,035	2,859	2,859	2,795	100.0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그런데, 지상파 광고시장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지상파 광고매출은 2024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매출액은 향후에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지상파 TV광고 매출액은 2022년 1조 3,762억원, 2023년 1조 756억원, 2024년 1조 676억원(예상치)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²⁶⁾

○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5억 1,700만원(△32.5%) 감액된다면,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은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 내역사업을 통한 공익광고 제작·확산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32.5% 감액된 동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KOBACO의 경영 환경 변화 및 건전재정기조에 따라 감액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 내역사업 예산 조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3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8) 안전한 AI 활용 기반조성(3251-321): 보조사업자 지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의 동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지정하고, 와이즈유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예산 절감이 가능한 부분과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모로 결정하도록 하는 「보조금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지정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안전한 AI 활용 기반조성(3251-321)”은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가 신고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신규로 2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안전한 AI 활용 기반조성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계획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 (A)	집행액 (실집행액)			
☐ 안전한 AI 활용 기반조성	-	-	-	-	298	298	100.0
○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	-	-	-	298	298	100.0
☐ 비목							
○ 민간경상보조(320-01)	-	-	-	-	298	298	100.0

주: 2024년 9월 말 기준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사항: 보조사업자 지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세부사업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은 1개의 내역사업(“생성형 AI이용자 참여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이용자 참여 플랫폼을 개발하여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내용임.

< 세부사업 “안전한 AI활용 기반 조성” 2025년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안) 산출 내역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298(신규)
○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발 : 100백만원 • 이용자 신고내역 확인 및 정보제공 : 145.6백만원 •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9개월) : 52.4백만원	298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은 이용자가 생성형 AI의 위험요소를 플랫폼에 신고하고, 해당 내용의 검증·공유를 통해 생성형 AI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이용자포털인 와이즈유저(wiseuser.go.kr) 홈페이지를 개편·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즈유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 와이즈유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²⁷⁾은 보조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음.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와이즈유저 예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지정하였다고 설명하였음.

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와이즈유저는 주로 휴대폰 단말기, 요금제, IPTV와의 결합상품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안내하고 있어, 생성형 AI 이용 부작용에 대해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신규사업과는 성격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음.

- 와이즈유저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로, 현재에는 이용자가 방송통신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보다는 휴대폰 단말기, 휴대폰 요금제, IPTV와의 결합상품 가입, 이와 관련된 허위·과장광고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주로 안내하고 있음.

- 그런데, 신규사업은 생성형 AI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편향, 허위조작정보 등 다양한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와이즈유저와는 성격이 다소 상이함.

<와이즈유저 홈페이지>



- 이에 따라, 신규사업과 성격이 다소 상이한 와이즈유저 홈페이지 운영자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보조금법」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지정하고, 와이즈유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예산 절감이 가능한 부분과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모로 결정하도록 하는 「보조금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지정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